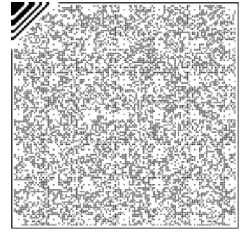




# 환경부



수신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 
(경유)

제목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(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) 회신

귀 협회에서 한돈협지 310-1호('24.01.15)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□ 질의요지

-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산정 기준
- 배출시설의 배출량이 30%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

□ 회신내용

- 「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(해설서, '23)」는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으로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산출한 것이며 배출시설의 면적 당 가축사육두수에 관한 규정하고 있지 않음
  - 가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「축산법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「축산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사육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임
- 「가축분뇨법」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,
  - 가축분뇨 배출량이 30%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환경부 장관



주무관 이수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업사무관 박춘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결 2024. 1. 23.

협조자

시행 수질수생태과-329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24. 1. 23.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접수

우 3010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,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(어진동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707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팩스번호 044-201-707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[suj100@me.go.kr](mailto:suj100@me.go.kr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대한민국 공개